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교 통 · 에 너 지 · 환 경 세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구윤철 (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·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간을 ‘2026년 4월 30일까지’에서 ‘2026년 5월 31일까지’로 연장하되, 최근 유류 가격 변동을 고려해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50원으로,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281원으로 인하폭을 각각 확대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제1호 단서 중 “2026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92원”을 “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450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“2026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37.5원”을 “2026년 5월 31일까지는 리터당 281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휘발유·경유 등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조정 등에 따른 적용례 등)

①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.

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화된 물품을 2026년 3월 27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

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6년 4월 30일
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의
개정규정에 따라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
부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.

③ 2026년 3월 26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했거나 수입신고한 물품
에 대한 교통·에너지·환경세 세율은 제3조의2제1호 단서 및 같은
조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탄력세율) 법 제2조제3 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의2(탄력세율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: 리터당 529 원. 다만, <u>2026년 4월 30일까 지는 리터당 492원</u> 으로 한다.	1. ----- ----- --. ---- <u>2026년 5월 31일까 지는 리터당 450원</u> -----.
2.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: 리터당 375 원. 다만, <u>2026년 4월 30일까 지는 리터당 337.5원</u> 으로 한 다.	2. ----- ----- --. ---- <u>2026년 5월 31일까 지는 리터당 281원</u> ----- --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재정경제부 환경에너지세제과	
연 락 처	(044) 215 - 4331